

『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입니다.

오늘 『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현재 굴착공사 시 흙막이 가시설 및 지반안전성의 검토를 위해 스마트 계측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에 따른 건축공사에만 한정되어 있어 그 이외

의 지하개발 공공공사 흠막이 계측관리에 스마트 계측을 적용함에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○ 이에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개발 사업자에게 스마트 계측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